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제51조제2항 후단 중 “47명을”을 “48명을”로 한다.

제5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03”을 “608”로 하고, 일반직 계 “599”를 “60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82”를 “58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036”을 “3,0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25”를 “2,9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02”를 “2,90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55조제1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일반직 계	7
4급 또는 5급 이하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 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청사의 유지 · 관리 및 방호</u>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생 략)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 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 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u>47명</u> 을, 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 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② ----- ----- -----. ----- ----- ----- ----- ----- <u>48명</u> 을----- ----- ----- ----- ----- ----- ----- ----- ----- -----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제55조(한시정원) ① ~ ③ 삭 제 ④ ~ ⑫ (생 략) ⑬ ~ ⑮ 삭 제 <u><신 설></u>	-----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한시정원) ④ ~ ⑫ (현행과 같음) <u>⑰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 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03</u>	<u>608</u>	+5
·	·	·	
·	·	·	
일반직 계	<u>599</u>	<u>604</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82</u>	<u>587</u>	+5
·	·	·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036</u>	<u>3,040</u>	+4
·	·	·	
·	·	·	
일반직 계	<u>2,925</u>	<u>2,929</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902</u>	<u>2,906</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